

의안번호	제 97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10월 5일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7
----------	----

발의연월일 : 2022년 10월 5일  
발 의 자 : 박병천, 김현문, 이정범,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윅희 의원

## 1. 제안 이유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잡힌 식생활 개선과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역량을 함양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학교 채식급식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채식급식의 날 운영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을 말한다.
2.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우유·유제품, 동물의 알, 해산물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이나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채식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급식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채식급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채식급식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축제 또는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건강이나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채식과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식급식에 관한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채식급식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2020. 1. 29., 2021. 3.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제7조(교육 등), 제8조(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 내에서 '채식급식의 날' 운영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